

I 브라운스톤 용산 입주자모집공고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용산구청 주택과 제4570(2008. 03. 31)호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문동 90번지 및 원호로 3가 1번지 일원
 - ▣ 공급규모 : 지하2층~지상10층 총 195세대 중 일반분양 6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3자녀 특별공급 2세대 포함]
 - ▣ 공급면적 및 공급금액

구분	아파트 코드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주 택 형 (㎡)	세대별계약면적				대지자분	층 수	층 별	공 급 세대수	분 양 가 격		
				세대별공급면적		세 대 별 기 타 공 용 면적(지하주차장 등)	계 약 면적					대 지 비	건 축 비	계
		전 용	주 거공용	소 계										

주 택 형 (㎡)	층 별	총분양금액	계 약 금 (계약시)	중 도 금						잔 금 (입주시)
				1회 (2008. 08. 10)	2회 (2008. 12. 10)	3회 (2009. 04. 10)	4회 (2009. 08. 10)	5회 (2009. 12. 10)	6회 (2010. 04. 10)	
79.44	1층	366,040,000	73,208,000	36,604,000	36,604,000	36,604,000	36,604,000	36,604,000	36,604,000	73,208,000
	2층	375,430,000	75,086,000	37,543,000	37,543,000	37,543,000	37,543,000	37,543,000	37,543,000	75,086,000
	3~4층	381,150,000	76,230,000	38,115,000	38,115,000	38,115,000	38,115,000	38,115,000	38,115,000	76,230,000
	기준층	385,000,000	77,0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38,500,000	77,000,000
137.07	1층	732,090,000	146,418,000	73,209,000	73,209,000	73,209,000	73,209,000	73,209,000	73,209,000	146,418,000
	2층	750,860,000	150,172,000	75,086,000	75,086,000	75,086,000	75,086,000	75,086,000	75,086,000	150,172,000
	3~4층	762,300,000	152,460,000	76,230,000	76,230,000	76,230,000	76,230,000	76,230,000	76,230,000	152,460,000
	기준층	770,000,000	154,000,000	77,000,000	77,000,000	77,000,000	77,000,000	77,000,000	77,000,000	154,000,000
공 정 율				6.08%	18.88%	30.99%	43.18%	57.55%	75.18%	100%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평형 환산 방범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평형환산방법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79.44㎡ (구)24평형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137.07㎡ (구)34평형 </div>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3025 또는 ㎡ ÷ 3.3058 </div>			

▣ 공동사항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 실시에 의하여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당사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가 미포함되어 있으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등에 대한 계약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상기 공급금액은 별도계약목적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별도 계약품목은 분양계약자가 선택계약하는 사항임.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 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중도금 납부 기준공정시점 이후 납입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단, 대출 미신청자 또는 본인외 부적격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할 시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대출이 본인외 직접 납부하여야 함.(미납 시 연체료가 부과)
- 잔금은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다만 임시 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받으며, 전체 입주금에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청탁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서울특별시 용산구는 투기과열지구(2002. 09. 06부터 시행)로 지정되어, 계약체결 가능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됨.
- 서울특별시 용산구는 주택투기지역(2005. 6. 30부터 시행)으로 지정되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제한이 적용됨.
-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입주개시 전 특정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사전점검모독 할 예정임.
- 층수는 건물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임(필로티가 있는 등은 필로티 공간을 1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를 산정함)
- 분양기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조세(재산세 등)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납부 시 정산할 예정임. (단, 재산세는 분리과세기준)
- 세대별 대지자분은 법령에 따른 확정측량 등 공부정리청탁 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음. 또한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세대원 주택청약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02. 9. 3 및 2002. 10. 29)에 따라 순위자 중 과거 5년 이내 주택에 당첨된 사실 및 1세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 포함)는 1순위 청약이 불가(2순위 청약가능)하며, 상기 요건 및 무주택 요건을 위반하여 당첨이 되었거나,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 당 아파트는 2007. 9. 1 이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되는 민영주택으로 청약가점제도가 적용됨.
- ※ 세대별 대지자분은 주택형별 분양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 이전등기 시 지적청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 시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인터넷·KB모바일 청약 신청 서비스 이용안내

구 분	국민은행(구, 주택은행 포함)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이 용 대 상	인 터 넷	- 제1, 2순위 : 청약자격 1, 2순위에 해당하는 분 - 3순위 : 병간격제에 3순위 청약신청액 이상의 잔고가 있는 분(단, 국민은행 통장거래 고객에 한함)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 뱅킹 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
	KB모바일	- 제1, 2순위 : 청약자격 1, 2순위에 해당하는 분	-
이용방법 및 절차	인 터 넷	-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 ⇒ 인터넷 청약	-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i2you.com)에 접속
	KB모바일	- SKT : Mbank 접속 ⇒ KB StarNet ⇒ 모바일주택청약 ⇒ PIN입력 ⇒ 주택청약신청	-
		- KTF, LGT : KB뱅킹 ⇒ 모바일주택청약 ⇒ PIN 입력 ⇒ 주택청약신청	-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3자녀 특별공급(건설량의 3% 범위 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 03. 31)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만20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둔 무주택 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에게 건설량의 3% 범위 내에서 특별 공급함.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이하 "단독세대주"라 한다)로서 20세 이상인 자는 세대주로 본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의 50%는 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는 인구비율에(통계청 통계청 시스템의 2006년도 내국인 인구통계) 따라 경기도 거주자에게 50%를 각각 공급함
- 청약예금 가입여부 및 과거에 당첨된 사실여부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함. 단,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중 재당첨제한 기간내에 있는 자는 제외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주인원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자녀 모두 인법상 미성년자(만20세 미만)이어야 함
- 자녀수에 인양자녀도 포함됨. 단, 임신중에 있는 태어는 제외됨
- 입주자 신청방법: 우선 순위 주택표에 의한 접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3자녀 특별공급 세대

구 분	79.44㎡	계
서울특별시	1 세대	2 세대
경 기 도	1 세대	

- 특별공급신청 미달 시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함(일반공급:특별공급을 제외한 순위 내 청약자에게 공급하는 물량)
- 3자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중복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처리함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주택은 우선순위 배정표 상의 차순위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공급함
- 신청일시 및 장소 : 2008. 04. 07 (월) (10 : 00 ~ 15 : 00) / 당사 견본주택
- 동·호수 추정일시 및 장소 : 2008. 04. 07 (월) (16:00 / 당사 견본주택(개별통치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응급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3자녀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정기준

평 점 요 소	총배점	배 점 기 준		점 수	비 고
		기 준			
계	100				
자녀수 (1)	미성년자녀	40	4자녀 이상	40	자녀(입양)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3자녀	35	
	10	2명 이상	10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5	1명	5	
세대구성(2)	10		3세대 이상	10	-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 직계존속은 배우자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
			2세대	5	
무주택기간(3)	20		세대주 나이 40세 이상, 무주택 10년 이상	2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외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세대주 나이 35세 이상, 무주택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도 거주기간(4)	20		10년 이상	20	- 세대주가 당해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특별시, 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5	1년 미만	5	

- ※ (1), (2)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 증명서"로 확인
- (3) : 국토해양부(구 건교부) 등 주택소유 전산감색으로 확인 (4) :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 ※ 동점자 처리기준 : ① 미성년자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적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사 황
본인신청 시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특별공급신청서 및 배정기준표(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및 각 시, 군, 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 03. 31) 현재 무주택 세대주 입증서류(건축물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지정받고자 하는 시·도 지역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 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1통(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 1통(아래 해당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②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로서 20세 이상인 자에 한함 ③ 미혼, 이혼, 사별, 배우자와 분리세대 등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확인이 불가한 자 •주민등록증 또는 혼전연하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인강도장 ·인강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여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청약자의 인강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② 청약자의 인강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③ 청약자의 인강도장 ④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기간 신청, 배우자 확인 단계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상기 제출영 서류 중 주민등록등·초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2. 일반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 03. 31) 현재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인 재(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인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서울특별시지역 이외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으로 주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청약 가능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입주자모집공고본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하는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 동일 순위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거주 신청자가 우선하며, 수도권지역 거주자는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됨.
- 당 주택부지는 투기과열지구 내에 위치하여 분양권 전매제한이 적용되며, 1순위자 중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사실이 있을 때, 세대주가 아닌 자(2002.9.5. 이후 가입자에 한함), 1세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재청약자 본인,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포함)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됨(2순위 청약 신청은 가능)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로 재청정 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당 주택에 공급 신청할 수 없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3조 1항)
- 상기주택에 신청하여 당첨이 될 경우 당첨받은 잔산 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 신청 시 1순위 청약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계좌 재사용이 불가함.
- 주택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음.

3. 일반공급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구분	순 위	주택형	신 청 자 격	거주구분	접수일자	접수장소	당첨자발표
영	1순위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가점제 :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외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 •추첨제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 함) ·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1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청약신청 시 자동으로 추첨제 1순위 대상자로 접수됨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 이상 시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에 대하여 감점은 적용됨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 수도권	2008. 04.08	<ul style="list-style-type: none">•접수장소 : 인터넷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www.kbstar.com •장소 : 당사 견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불입한 1순위로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85㎡~102㎡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1980. 8. 29 이전 국민은행(구 주택은행)의 재청저축에 가입하였거나, 1981. 5. 22 이전 국민주택 청약부금 가입자 중 청약자격 제승하위로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85㎡ 이하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 예금에 예치금액으로 변경 후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분 (85㎡ 초과 주택에 한함)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 이상이 경과된 제1순위로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1순위(자로서 들 중 1에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직계 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당첨사실 포함된 세대에 속한 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한 분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관련 예금에 가입한 분 중 세대주가 아닌 분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참조)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는 예외적으로 2순위 청약 가능함					
주 택	2순위	85㎡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별도 가점제 신청자격 제한 없음 (모든 청약자 가점제로 청약 접수)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2008. 04.10	<ul style="list-style-type: none">•접수시간 : 08:30~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불입한 2순위로서서 납입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청약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으로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 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1순위자 중 상기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되는 분					
	3순위	전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2008. 04.11	<ul style="list-style-type: none">•접수장소 : 국민은행 인터넷, KB모바일 •접수시간 : 08:30~18:00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체결일시정당 당첨자) : 2008. 4. 22 (화) ~ 2008. 4. 24(목), (3일간, 시간 : 10:00 ~ 16:30)
- 계약금 납부 및 계약체결 장소 : 당사 견본주택(안도 및 전화번호 참조)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상태 및 과거 당첨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됨

■ 분양대금 납부계획 및 납부방범

- 지정된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에 국민은행 본 : 지점 무통장 입금(타행인금 불가)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이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당첨 효력이 상실됨.
- 납부계획

납 부 은 행	계 좌 번 호	예 금 주	비 고
국 민 은 행	658101-01-439735	용문구역 주택재개발조합(외 1인)	시행자 및 시공사 공동명의

- 상기 계좌는 시행자가 시공사에 위임한 계좌임.

■ 계약 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서 류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주택공공신청 접수(영수증) 단, 인터넷, 모바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자는 재출생액 계약자의 인감도장 계약금(서울특별시 소재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인 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계약자의 인감증서 1통(용도: 아파트 계약용) 본인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세대주, 20세 이상여부 등) 주민등록증 또는 온전면허증, 주민등록증 · 초본 1통,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함) 가족관계증서 1통(미혼, 이혼, 사별, 배우자와 분리세대 등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확인이 불가한 자에 한함)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명세서) 사본 1부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 증명서) 사본 1부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당첨자중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서류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증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기타 무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소환 : 자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공사업 증명원 등)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존 · 비속포함)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 추가제출 계약자의 인감증서 1통(용도 : 아파트계약 위임용), 계약자의 인감도장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도장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계약체결 장소 비치)

- 상기 제증명서류는 계약일 3개월 이내에 발행본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 (계약 시 외국인의 구비사항은 공공신청 시 구비사항과 동일함)
- 2005. 7. 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포 등 · 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기간 선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람.

■ 계약조건 등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라도 다음 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공계약은 취소되고,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으며, 당첨된 청약 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함.
 - 청약기정항목(무주택기간, 분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 이상 소유자로 판명될 경우
 - 1순위 당첨자 중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
 -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예금(부금)에 가입한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자로 판명된 경우(2005. 9. 5 가입자 포함)
 - 1 · 2 · 3순위 당첨자 중 과거 분양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당첨된 자 또는 기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 해당첨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자
 -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하여, 금융결제원에 5년 이내 제당첨 여부를 검색하고 특별부금 및 1순위자 분리세대(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는 국토해양부(구 건교부)에 무주택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로 판명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 각 동일한 청약관련 통장으로는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 당첨된 아파트는 취소되며, 통장 재사용 불가 및 당첨자 관리가 됨.
 - 동일세대 내에서 세대원이 각 각 1순위로 신청하여 중복당첨된 경우에는 1건만 계약체결 가능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 5항에 의거)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함.
 - * 주민등록번호 변경 위반 및 청약관련통장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인한 자의 청약관련 통장 등을 사실 상 양도받아 공공신청 및 계약 시는 이미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여 당첨자로 관리할 뿐만 아니라 당첨계좌 재사용 불가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전권완료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아파트의 배치, 구조 및 동 :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당해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 시 1순위 청약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및 동 : 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여기서 정하지 아니한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를 적용함.
 - * 입주개시 전 특정일자를 계약자들에게 통보하여 입주자 사전점검을 하도록 할 예정임.
 - 하자보수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공동주택관리규 제16조에 따라 적용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준함.

■ 입주예정일 : 2010년 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입인은 적용되지 않음.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

■ 용자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용자 금액은 향후 정부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이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사정에 의한 중도금대출 불가자는 납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중도금을 납부해야 한다. (미납 시 연체료 가산됨)
- 당 사업자는 당사가 안내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총분양금액의 40%대출이 가능하나, 당첨된 주택의 공공금액, 개인의 신용상태 및 소득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변동될 수 있으나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람. 이에 따른 대출불가 및 축소 등 의 사유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은 사업주체가 지지 않음.

■ 인터넷, ARS, 모바일 당첨자 발표 이용 안내

-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 서비스이므로 반드시 당첨자발표 장소 등에서 당첨여부를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 분	국민은행 (국민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에 한함)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외의 은행에서 청약접수한 분)
인 터 넷	<div><div><div>이용방법</div></div></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당첨확인 → 주택별 조회 <div><div><div>이용기간</div></div></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2008. 04. 17 ~ 2008. 04. 26	<div><div><div>금융결제원 홈페이지(www.ap2you.com)접속 →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div></div></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2008. 04. 17 ~ 2008. 04. 26
전 화 (ARS)	<div><div><div>이용방법</div></div></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먼저 이용 전화번호를 누르신 후 안내말에 따라 청약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등을 연속하여 누름 <div><div><div>전화번호</div></div></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1588-9999 (서비스번호 : 701) <div><div><div>이용기간 및 시간</div></div></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2008. 04. 17 ~ 2008. 04. 26	<div><div><div>☎ 1369 (서비스코드 : 5#)</div></div></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2008. 04. 17 ~ 2008. 04. 26
KB모바일	<div><div><div>이용방법</div></div></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SKT : Mbank 접속 → MB SatrNet → 모바일 주택청약 → PIN입력 → 당첨확인 KTF, LGT : KB뱅크 → 모바일주택청약 → PIN입력→ 당첨확인 <div><div><div>이용기간</div></div></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2008. 04. 17 ~ 2008. 04. 26	-
휴대폰 문자 서비스	<div><div><div>대 상</div></div></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국민은행 주택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 자 <div><div><div>제공일시</div></div></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2008. 04. 17 08:3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 입주자 사전점검

-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주방용구,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구 건교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 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유의사항

- 주택공공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청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환산방법 : 형별면적(㎡) X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 주택공공신청서 상에 청약자가 기재한 내용과 단말기로 인자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종전보다 적은 규모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공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청약이 가능하며, 향후 다른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당첨자 발표일 기준)이 동일한 2개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는 청약 모두를 무효처리함.
- 신청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주택공공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단, 접수 당일 접수시간 내에 한하여 취소 가능)
- 선 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 공공 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율(일반공공 세대수의 20%)에 미달 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로 선정(3순위당첨자 포함)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함.
- 보증시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별도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다소 지연될 수 있음.
- 이 아파트는 실 입주자를 위하여 간접하는 것으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행위로 주택공급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해당 관계 법규에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됨.
- 하자 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견본주택에 사용된 제품은 자재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타로그, 기타 홍보물 상 조감도 또는 사진은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철거전에 사진 및 비디오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이다.
-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단지모형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는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세다가 속한 동, 층 및 할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의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주택법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 : 허가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적리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변동 시 공급가격에 의해 상호 정산 처리함.
-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간접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할.
- 본 단지의 명칭, 종표시, 외부색채와 계획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되며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드레인의 위치와 개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외벽은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가구 및 구조체 등의 치수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시사 및 인터리어 공사는 입주자 본인의 판단하에 설치하여야 함.
- 확장형 발코니에는 법규 상 1.5층형 발코니 난간에 2층~최상층 구간에 방화유리가 설치 된다.
- 발코니 확장 공사는 별도 계약품목(추후 공지 예정)으로 분양계약자가 선택계약하는 사항이며,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출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 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및 우천 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다중 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관리법 제9조에 의거 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주민 입주 3일 전부터 60일 간 관리 사무소 인규 게시판 및 각 공동주택 출입문에 공고할 예정이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함, 단지 내 시설물의 변경, 항 :층에 따라 일조권, 환경권, 도로소음발생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외부시설물(어린이놀이터, 휴게소, 가로등, 벤치 등)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은 입주인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 * 당 사업은 주택성능등급제 대상이 아님.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한주택보증(주)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 : 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의 색채, 시설물의 배치, 구획, 면적, 모양, 축벽그래픽 및 사진, 조경 등 외부사항은 인 : 허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와 계단의 위치는 좌 : 우 세대의 위치에 따라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으므로 상세한 사항은 계약 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분청 마감과 확장형 마감은 가구의 설치, 위치, 크기 등도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을 계약 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어떠한 민원도 제기할 수 없음.
- 확장형 발코니 난간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방화를 위한 유리 난간이 설치되고, 침실 발코니 층에 긴급 시 인접세대로 대피가 가능한 칸막이 벽이 설치됩니다. 이 경우 주택형별, 층별로 칸막이 벽의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발코니 일부를 대피공간으로 변경하거나 별도로 구획된 침실의 출입문을 방화문으로 설치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옥상층에 의장용 구조물, 아간경관용 조명, 항공 장애등,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카타로그 등의 홍보물에 사용된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는 입주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가전제품, 인터리어 소품 등을 배치하여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대한주택보증(주)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보 증 기 간	보 증 금 액	보 증 서 번 호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 부터 소유권보존등기(실사용시점 포함) 까지	₩ 24,837,928,000	제 01282008-101-0003500 호

(단위 : 원)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의 범위 : 주택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4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의한 입주금의 환급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다.
 - 천재지변, 전쟁, 내란 및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 계약을 이행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처명, 이중계약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정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 납부계획(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 납부계획을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획을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 보증회사(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증지 통보계획에 납부한 입주금
 -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증속채무
 -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 입주자모집공고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망신탁품목(에서 : 홀오트, 발코니시사, 마이너스울셋 부원, 기타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중 전채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감리회사 및 감리계약금액

(단위 : 원, 부가세 별도)

구 분	감 리 회 사	감 리 계 약 금 액	사 업 장소 재 지
건 축	(주)성일종합건축사사무소	₩ 674,464,132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578
설비 / 전기 / 소방 / 정보통신	(주)세광디자인	₩ 32,000,000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330

■ 시행자 : 용문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 시공사 : 이수건설㈜ (법인등록번호 : 110111-02022202)

■ 견본주택 및 분양문의 :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동 293-11 ☎02)2293-3900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및 공급회사에 문의하여 재확인 하시기 바랍니다.